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최근 외국인 등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수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,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유를 보다 명확화·구체화하는 한편, 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(안 제5조의2제3항)

- 1)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* 사항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

* (현행)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” → (권고안) “천재지변 또는 재해에 준하는 사유”

나.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사(행정처분 등)에 필요한 개인(외국인)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(안 제9조의2)

* (현행)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→ (개정안)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

다. 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화(안 별표 1의2제1호)

1) 법 개정('20.5.26)에 따라 “2년간 2회 이상”을 “2년 이내 2회”로 현행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등 합의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3항 단서 중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”을 “천재지변 또는 재해에 준하는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”를 “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제1호가목 전단 및 나목 중 “2년간”을 각각 “2년 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)	제5조의2(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)
①·② (생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관세청장,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천재지변 또는 재해에 준하는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~ ⑩ (생략)	④ ~ ⑩ (현행과 같음)
제9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관세청장(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을 위임·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(해당 권한을 위임·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	제9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
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
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
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[별표 1의2] 과징금 부과기준

1. 일반기준

가.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간 2
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
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로 적
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
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
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
다.

나. 2년간 2회 위반한 경우에는
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
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
로 과징금을 산정·부과하고,
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해
당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
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·
부과한다.

다. ~ 마. (생략)

2. (생략)

----- 제19조제1호,
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
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
인등록번호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의2] 과징금 부과기준

1. 일반기준

가. ----- 2년 이내

-----.

나. 2년 이내 -----

-----.

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	
연 락 처	(044) 201 - 2277